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논문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조유정

지도교수 이승희

2019年 2月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2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조유정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조유정

상기자의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익한 印

심사위원 이해영 印

심사위원 이승휘 印

2019년 2월

목 차

그림 목차	ii
표 목차	iii
국문 초록	iv
제1장 서 론	1
제2장 제주 4·3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현황	4
제1절 기관 및 소장 기록물 현황	4
1. 기관 현황	4
2. 소장 기록물 현황	6
제2절 수집 정책의 부재	9
제3절 문제점	11
제3장 제주 4·3 사건 기록의 특성	13
제1절 강요된 침묵으로 인한 기록 문화의 퇴보	13
1.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론 탄압 및 인식 왜곡 배경	13
2. 통제된 여론 속 정부의 기록 왜곡과 그로 인해 퇴보된 기록 문화	14
제2절 제주 4·3 사건 기록이 왜곡된 배경	16
1. 당시 군·경 및 독재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통제된 언론	16
2. 왜곡된 기록 수집 이유 및 구술 기록의 중요성	18
제3절 미국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	20
1. 당시 미국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20
2. 미군정 기록 속에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개입 증거	21
제4절 제주 4·3 사건 구술 기록의 중요성	25
1.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구술 채록 작업	25
2. 구술 채록 작업을 통해 살펴본 구술 기록의 중요성	27

제4장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방안	29
제1절 퇴보된 기록 문화 속에 남겨진 기록 복구	29
제2절 왜곡된 기록의 수집	33
제3절 미국의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의 수집	36
제4절 구술 기록의 수집	41
제5장 결론	46
참고문헌	48
Abstract	52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 4·3 평화 기념관 내 전시관 구성도	5
<그림 2> 사료 아카이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	6
<그림 3> 사료 아카이브의 자료 구축 현황	6
<그림 4> 문헌 자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	7
<그림 5> 문헌 자료의 자료 구축 현황	7
<그림 6> 자료 기증 절차	10
<그림 7> <여명의 눈동자> 중 제주도에서 작별하는 모습	32

표 목차

<표 1> 4·3 아카이브 비공개 자료 목록	9
<표 2> 수집 대상 목록	10
<표 3> NARA 한국 관련 주요 문서군	37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정책에 대한 연구

조 유 정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지도교수 이 승 휘

본 연구는 우선 현재 제주 4·3 아카이브에서의 기록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보다 체계적인 수집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의 기록은 지난 50여 년간 묻혀 있다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일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오랜 기간 동안 탄압받던 동안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인식 및 여론이 왜곡되었다. 이는 비단 제주 4·3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독재정권 시기에 발생한 기록들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최근까지 기록 문화가 퇴보된 모습을 보여 왔다. 둘째, 제주 4·3 사건 기록은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한 경로로 왜곡되었다. 셋째, 미군정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당시 미국 측에서 작성한 제주 4·3 사건 관련 자료 및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구술 기록은 보통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주 4·3 사건 기록에서는 구술 기록이 다른 문헌 자료보다 신뢰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네 가지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수집 방안을 제시하면서, 제주 4·3 사건 기록의 수집 정책을 연구해보았다.

주제어

제주 4·3 사건, 구술기록, 왜곡된 기록, 기록 수집 정책, 증언채록, 4·3 아카이브, 4·3

제1장 서론

역사는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학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는 역할에 충실했어야 하므로, 과거 기록을 통해 이전 사건·사고의 원인 및 문제 점 등을 살펴본 다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사건·사고에 대비할 만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는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이는 곧 사건·사고 이후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또한, 여기에는 법과 경찰 사회처럼 ‘정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제노사이드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은 사건 이후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밝혀낸 다음,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고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

해외 제노사이드 및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처럼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진상 규명 조사가 잘 이루어지는 중이고, 관련 기념관 및 전시회 또한 잘 구성되어 있다. 기록 관리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하게 온라인 서비스도 잘 구현되어 있다.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The Holocaust Memorial Museum),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南京大屠杀纪念馆, The Memorial of the Nanjing Massacre)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과 제3세계에서 발생한 군부 정권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및 민주화 운동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 기관들로, 처음엔 서구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전자의 사건에 해당되는 독일, 폴란드, 미국, 일본 등의 기념 시설들은 시기적으로 앞서며,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후자와 관련된 기념 사업은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졌는데, 기념탑 혹은 상징물 건립이 대부분이다.¹⁾

허나 국내 제노사이드 및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 관리는 사건 이후 수십 년이 지

1) 정호기 (2005). 기념관 건립 운동의 변화와 동학 : 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26-250. p229.

난 지금까지도 아직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앤드류(Charles. M. Andrews)는 “한국인이 과거 시대 기념물의 보존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이 도달한 문명의 수준에 대한 진정한 척도”²⁾라 하였다. 이 말은 곧 국내 기록 관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게 만든다.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와의 화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국가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비록 의도는 좋았으나, 결국 독재자를 미화하고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및 세월호 관련 기록 관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주 4·3 사건도 같이 주목받게 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최근에서야 재조명을 받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부터 1954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25,000 ~ 30,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후 2005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한국 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진상 규명은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위 민간인 학살의 경우 가해자가 대부분 당시 군대, 경찰 등 국가 조직이라 학살 전후 수십 년 동안 관련 기록이 은폐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이 말살되거나 장기간 비공개로 설정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기록이 아예 생산되지 않기도 했다. 이런 퇴행적 기록 문화는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주 4·3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발발하였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생각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 미군정, 이승만 정권, 그리고 폭동 등 다양한 용어가 제일 먼저 떠올려진다. 이를 통해 사건의 가해자 측이 군·경 등 국가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군정은 한때 ‘보이지 않는 손’이라며 정부 기관의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나온 적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 찾아볼 수 없으나, 미군정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들을 보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해있지 않고서는 모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게다가 당시 미국은 냉전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의 개입을 강력하고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

2) T. R. Schellenberg (1998). Modern Archives - Principle and Technique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es. p.9

다. 제주 4·3 사건에도 마찬가지였다. 제주도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주도민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학살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도 이를 방관하기만 하였다. 기록에도 학살이라는 증거를 찾기 힘들다. 당시 고문관들이었던 자들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증언은 하였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 모두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기록을 왜곡하거나 은폐시키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므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이 현재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들은 어디서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록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한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최근 현 정부에서 제주 4·3 사건을 재조명하고, 진상 규명에 힘을 쓰게 되면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던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제주 4·3 사건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정리 및 분류해야 하는 등 기록 관리의 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제주 4·3 아카이브 내 기관 및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관리 현황은 어떤지 먼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일 시급한 제주 4·3 관련 기록 수집 방안 문제에 대해 연구 및 검토를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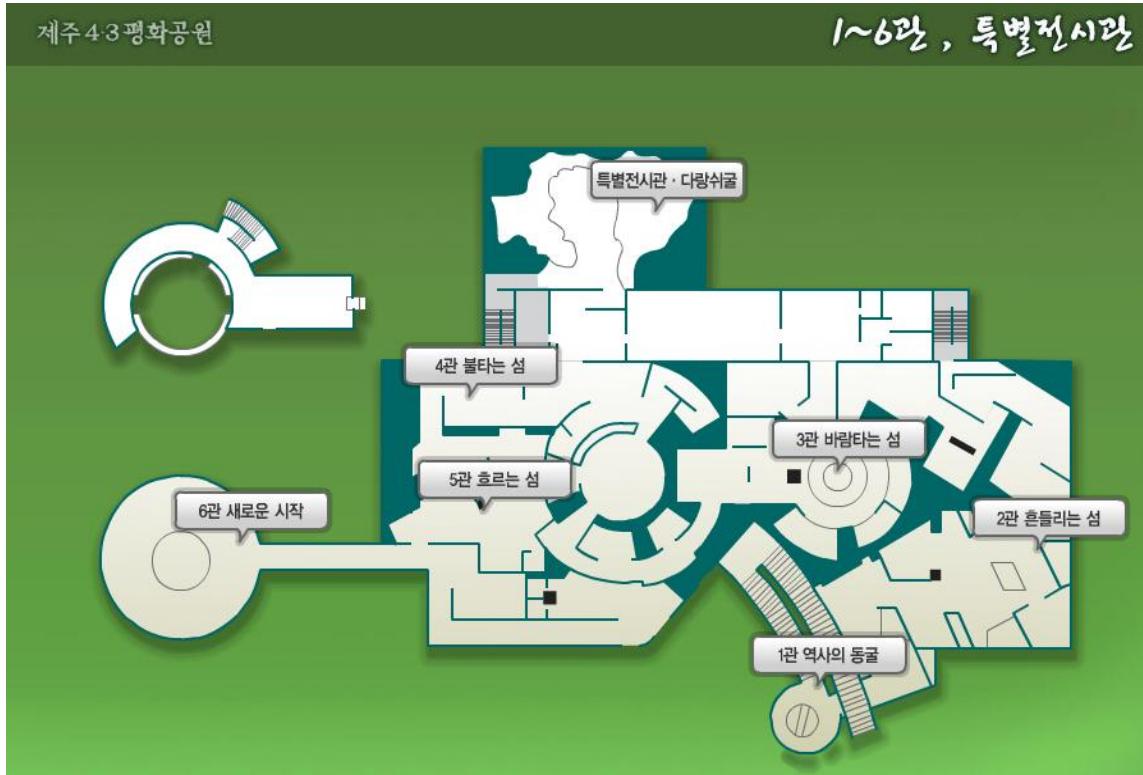
제2장 제주 4·3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현황

제1절 기관 및 소장 기록물 현황

1. 기관 현황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10월 16일 설립된 공익적 목적의 법인이다. 평화재단은 제주 4·3 평화공원 및 4·3평화 기념관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안에 4·3 아카이브 및 전시회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제주 4·3 평화공원은 위령제단, 위폐봉안실, 추모광장, 봉안관, 각명비원, 행방불명자비원, 초대광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령제단은 연중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하는 공간이고, 위폐봉안실은 14,117명의 위폐가 모셔져 있는 공간이다. 추모광장에서는 매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고 있다. 봉안관은 4·3 유해발굴사업에 의해 발굴된 400기의 유해가 봉안되어 있고, 각명비원에는 희생자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 행방불명자비원에는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이 3,895기 설치되어 있는데, 2018년 3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에만 2,012기가 나왔다. 나머지는 근처 지역인 경인, 대전, 영남, 호남 지역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 초대광장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평화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평화공원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건일지 및 관련 법령을 볼 수 있으며, 희생자의 위폐를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참배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기서 사이버 참배란 평화공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유가족 및 일반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평화공원에 있는 추모장소인 4·3 희생자 위령제단에 참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즉, 제주 4·3 평화공원은 한 마디로 희생자를 위한 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 제주 4·3 평화 기념관은 전시관과 아카이브 및 재단 관련 사무실이 한 곳에 몰려있는 시설로, 총 5층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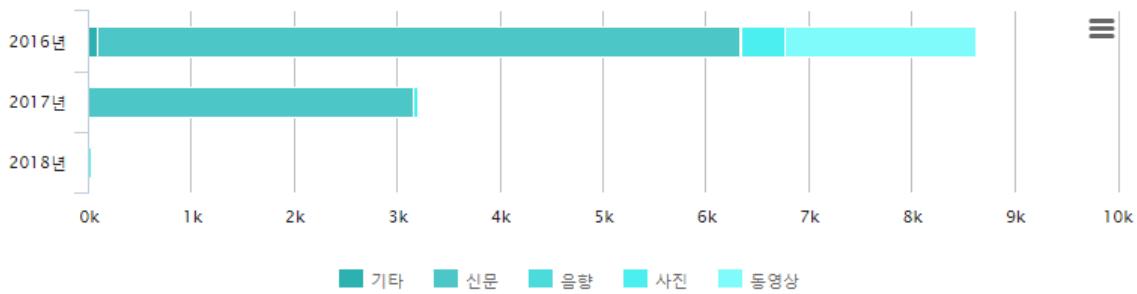


<그림 1> 제주 4·3 평화 기념관 내 전시관 구성도

전시관은 총 7개의 관으로 되어 있으며, 1관부터 역사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4관에는 한쪽에 세계의 제노사이드를 다루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비단 대한민국 내에 벌어진 비극적인 민간인 대학살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노사이드로 볼 수 있다는 관점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층과 4층에는 4·3 재단 관련 사무실과 아카이브실이 위치해있다. 아카이브실은 작은 규모로 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사업을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또한, 일부 자료들은 아카이브실이 아닌 사무실 내부의 책장에 꽂혀있는 상태였다. 이 모든 기관들을 운영 및 관리하는 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4·3 사건 희생자 추모 사업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학술 사업,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4·3 사료관 및 평화 공원 운영 관리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 중, 4·3 자료 아카이브 구축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실제로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2014년 5월부터 12월까지 4·3 디지털 아카이브 서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듬 해 3월부터 4·3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동시에 영구 보존을 위한 전자 기록으로 변환시키기 시작했다.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공개 서비스는 2017년 9월 20일부터 시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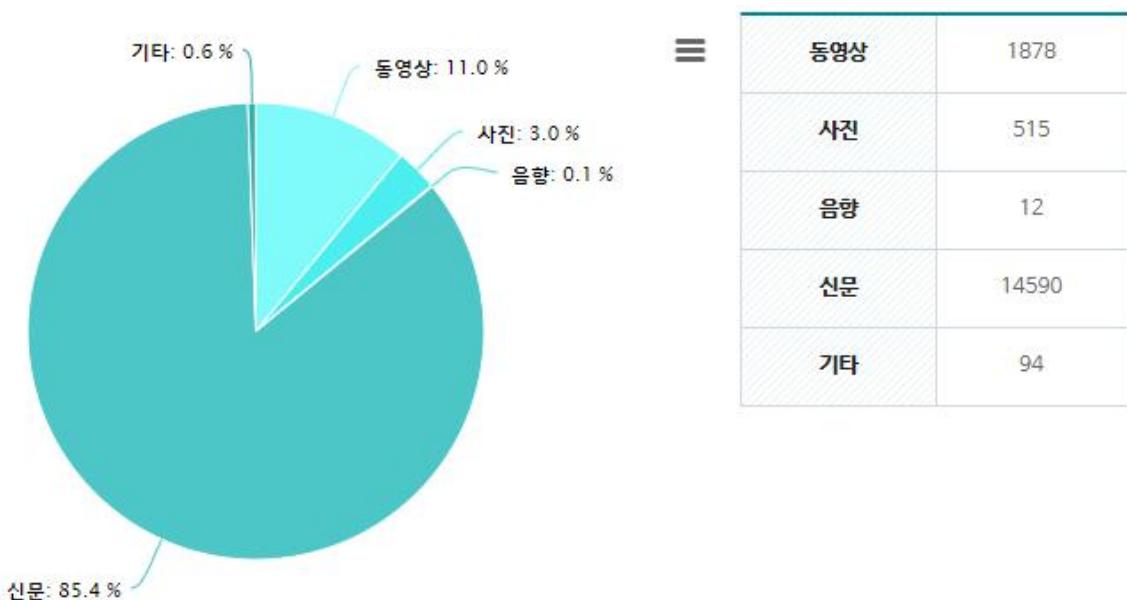
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2. 소장 기록물 현황



<그림 2> 사료 아카이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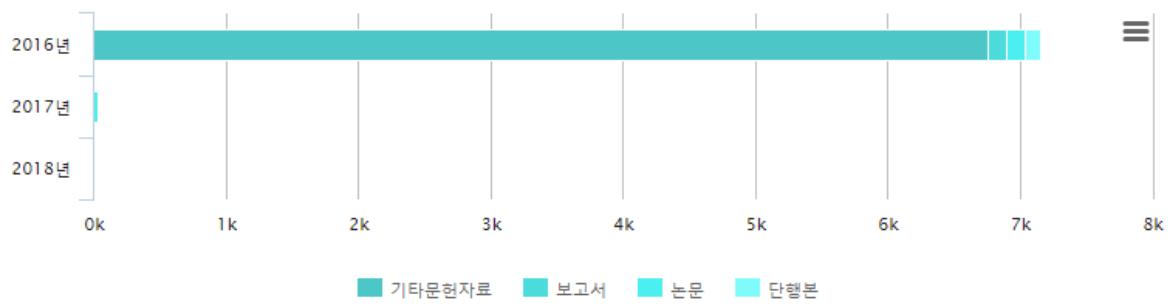
제주 4·3 아카이브에서 사료 아카이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를 보면, 2016년에는 신문 6,244건, 사진 433건, 동영상 1,588건, 기타 86건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2017년에는 신문 3,151건, 사진 48건, 동영상 14건으로 작년보다 양이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2018년은 사진 34건, 동영상 5건이 기록되었다. 이 통계를 통해 해가 갈수록 수집되는 기록의 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사료 아카이브의 자료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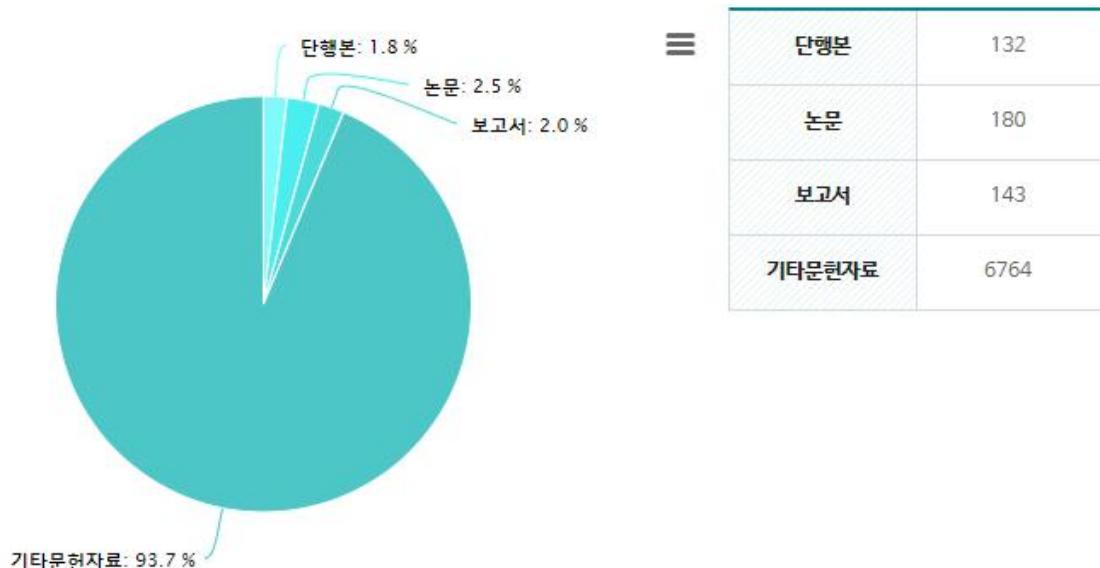
위 그림에 따르면, 현재 사료 아카이브의 자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자료의 형태는 신문이다. 신문 다음으로 자료 아카이브의 자료에서 비중이 큰 순서를 나열하자면 동영상, 사진, 기타, 음향 순이다. 여기서 기타 항목은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행사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형태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림 4> 문헌 자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

제주 4·3 아카이브에서 문헌 자료의 기간별 자료 구축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기타 문헌 자료가 6,764건, 보고서 138건, 논문 141건, 단행본 119건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논문 38건, 단행본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그림 5> 문헌 자료의 자료 구축 현황

문헌 자료에서 기타 문헌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타 문헌 자료는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4·3 사건 관련 문서, 세미나 관련

자료, 재판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4·3 사건 관련 문서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탄원서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발표문 및 사과 전문이 담겨있는 문서가 있다.

	일반분류	일차분류	이차분류	유형분류	제목	요약내용	생산년도	저작권자명	수집처	비공개사유
1	문헌자료	기타문서	문서	P D F	제주참여환경 연대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제주참여환경 연대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2003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4·3연구소	4·3 연구소 자료
2	문헌자료	단행본	기타단행본	P D F	4·3은 말한다 6권2모음집	4·3은 말한다 6권2모음집	미상	제민일보	4·3 평화재단	저작권
3	미디어자료	기타	포스터	기타	이재수의 난 영화 포스터 개봉일시 : 6월 26일	이재수의 난 영화 포스터 개봉일시 : 6월 26일	1999	시네마서비스	4·3 평화재단	제주사관련
4	문헌자료	단행본	자료집	P D F	법무부 관계서류	2001년 제주 4·3 사건위원회에 서 발간한 법무부 관계서류 (1947~1954)	2001	제주4·3사건위원회	4·3 평화재단	개인정보
5	문헌자	기타문	문서	P D F	한국전쟁사 10년 결쳐 재조명	한국전쟁사 10년 결쳐 재조명	2004	군사편찬연구	제주4·3연구소	4·3 연구소 자료

	료	현 자 료						소	소	
6	미 디 어 자 료	동 영 상	증 언 영 상	동 영 상	토별대 학살 증언 (김여수)	토별대 학살에 대한 김여수 씨의 증언 영상	미상	제주 특별 자치 도	4·3 평화 공원 홈페 이지	개인정 보법
7	미 디 어 자 료	동 영 상	기 록 영 상	동 영 상	제주 4·3 희생자 재일제주인 인터뷰	제주 4·3 희생자 재일제주인 인터뷰 기록 영상	미상	제주 특별 자치 도	4·3 평화 재단	저작권
8	미 디 어 자 료	동 영 상	방 송 / 영 화	동 영 상	시사기획 제주스페셜 '우도정 민선2기의 중간평가는?' 방송 영상	시사기획 제주스페셜 '우도정 민선2기의 중간평가는?' 방송 영상	2000	제주 특별 자치 도	4·3 평화 재단	개인정 보

<표 1> 4·3 아카이브 비공개 자료 목록

소장 기록 중 개인정보 법 및 저작권 문제³⁾로 인해 비공개 자료로 분류된 기록도 있다. 이 비공개 자료는 총 7,753건으로 위 <표 4>⁴⁾와 같이 목록화한 형태로 공개되어 있지만, 10가지 분류 항목만 볼 수 있을 뿐 그 안의 내용은 볼 수 없다. <표 4>는 7,753건의 비공개 자료를 분류 항목에 따라 하나씩 가져와서 예시로 만든 표다.

제2절 수집 정책의 부재

제주 4·3 아카이브에서는 주로 기증을 통해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기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 후 자료 인수 및

3) 4·3 아카이브에서는 현재 저작권 동의가 이루어진 자료에 한해 공개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자료의 경우 저작권 협의가 진행 중이다.

4) 4·3 아카이브 <http://43archives.or.kr/noticeD.do?articleSeq=12>

평가 과정을 거쳐 수증 처리를 한 다음, 기증받은 자료를 등록하면서 끝난다.⁵⁾



<그림 6> 자료 기증 절차

형태	상세 목록
문서류	전단, 정보 보고서, 일기장, 서간류, 4·3 관련 도서 및 작품집, 각종 인쇄물, 성명서, 탄원서 등
물품	당시 생활용품, 무기류, 희생자 유품 등
사진	희생자 사진 및 관련 현장 사진, 필름, 진상규명운동 관련 사진, 4·3 관련 국가기관(정부, 군, 경 등) 활동 기록사진, 피난지 사진 등
문화·예술 작품	4·3 형상화 미술품, 회화, 조각, 서예, 소설, 수필, 시, 시나리오 등
영상	제주 메이데이 영상, 4·3 증언 영상, 4·3 관련 방송물, 다큐멘터리 등
음향	4·3 관련 음악, 녹음 기록 등
기타	4·3과 관련 있는 사료 및 유물

<표 2> 수집 대상 목록

이때, 자료의 소장 과정이나 소유권의 출처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파손이나 훼손된 정도가 심해 가치가 손실된 경우 혹은 기증 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면 기증이 제한된다. 기증 외 다른 수집 방법에는 별도의 정책이 없으며, 온라인에서는 아예 소개되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기록을 수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기증뿐만 아니라 위탁, 구입, 구술 채록이 있다. 위탁은 기증과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염연히 다른 수집 방법이기에 따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구술 채록도 마찬가지다. 특히 제주 4·3 사건 기록과 같은 민간인 학살 기록에서는 대부분 기증과 구술 채록을 통해 기록을 수집하므로, 구술 채록에 대한 정책이 필수로 마련되

5) 4·3 아카이브 <http://43archives.or.kr/html/sub010301.do>

어야 한다. 수집 정책은 수집 방법에 따라 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 사건 전, 과정, 이후로 분류하여 기록을 수집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료의 원출처가 가해자 측이라면 왜곡 유무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밖에도 제주 4·3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 발생한 사건들도 세세하게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형태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관련 분류 항목을 정해두고 기록을 수집해야 나중에 기록을 관리하고 검색할 때 좀 더 수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사실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나, 이제야 기록 관리를 시작한 제주 4·3 사건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기대하기 힘든듯하다.

제3절 문제점

제주 4·3 평화재단이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 것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디지털 아카이브 또한 공개 서비스로 전환 된지 이제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제주 4·3 연구소와 재단 사무실에 연락해본 결과, 현재 연구소는 2008년까지 기록된 증언채록 및 각종 자료들을 전자 기록으로 등록한 정도에 그친 상태로, 아카이브 관련 업무는 재단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허나 재단 사무실에서도 기록관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매우 미흡한 부분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다. 우선 수집 정책 면을 살펴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가 기증이라는 방법 하나 빼곤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2장에 소개한 자료 구축 현황만 살펴봐도 자료를 대부분 기증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수집되는 양이 대폭 줄게 된다. 이는 앞으로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4·3 평화재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에는 제주 4·3 평화재단, 그중에서도 기록관리 쪽에 배분한 비용이 원활한 기록 관리를 위해 쓰이기엔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비슷비슷한 정도지만, 기록 관리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제주 4·3 재단에서 기록 관리에 들이는 비용의 액수는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다. 기록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시설, 장비

그리고 이를 다루며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러나, 비용이 적게 들어감으로써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수 또한 규모에 비해 적게 채용되었고, 관리 시설 및 장비도 부족한 수준이다. 제주 4·3 사건이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 관리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이고, 디지털 아카이브도 작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비용을 늘려야 한다.

제3장 제주 4·3 사건 기록의 특성

제1절 강요된 침묵으로 인한 기록 문화의 퇴보

1.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여론 탄압 및 인식 왜곡 배경

당시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후견인이었던 미군이 철수하려고 하자, 이승만은 미국의 남한의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 및 이에 따른 원조를 얻어내는데 제주의 상황을 이용했다. 이승만은 제주도에 침략한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면 남한에 군사적,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한이 원조를 요청할 때마다 주한미군사고문단은 시큰둥한 반응만을 보여 왔다. 이를 알고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하는 대신 직접 원조 요청을 하기 위해 조병옥을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에 파견하였으며, 미국 로비활동가도 여럿 고용하였다.⁶⁾ 이렇게 그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상황을 이용하여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나아가 학살당한 민간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감으로써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원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자국민의 생명보다 미국의 원조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그래서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 반란이고, 군경에 의해 피살된 자는 모두 무장한 유격대원이거나 그 동조자였으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나 북한, 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의해 제주도를 비롯해 한반도 전체를 적화(赤化)시키기 위해 공산도배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규정되어 왔다.⁷⁾

4·19 혁명 이후, 1960년 5월 제주대 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를 조직하여 진상조사 작업에 나섰으며, 유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주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야

6) John Roscoe Merrill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신성환 역). 서울 : 과학과 사상. p270

7)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p35.

한다고 밸의함으로써, 그 해 6월에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가 실시되었다. 진상조사는 겨우 3일 동안 진행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접수된 건만 총 1,259건에 달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된 후 20여 년간 군사정권 하에서 4·3 사건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되었다. 반공법, 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으로 인해 4·3 사건을 입밖에 내지도 못하게 되었다. 1978년에 현기영이라는 소설가가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을 통해 4·3 사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일부 드러내었지만, 그 또한 정보기관에 연행되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야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섰으며, 1989년에는 추모제를 개최하고 연구소를 발족(發足)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⁸⁾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대통령 최초로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으며, 2018년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념식에 참여하여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하여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결론지었다. 제주 4·3 사건은 사건 이후 50여 년이 흘러서야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공산 반란이 아닌 정부에 의한 민족 대학살 사건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2. 통제된 여론 속 정부의 기록 왜곡과 그로 인해 퇴보된 기록 문화

제주 4·3 사건 발발 이후 50여 년이 흐르도록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 공식적인 희생자 실태를 파악하지 않았다. 그 동안 4·3 사건 관련 기록은 군·경에서 주도하여 왜곡해왔으며, 4·3 사건에 대한 짧막한 논의를 하는 것조차 통제하였다. 그들은 제주 4·3 사건의 역사까지 본인들의 입맛대로 바꾸길 원했다. 이 때문에 4·3 사건 관련 기록 중에서도 군·경 자료에서 실제 피해자가 증언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당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흑백논리는 제주 4·3 사건 또한 ‘공산폭동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주한 것’이라는 비약된 등식을 적용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이데올로기로 인한 갈등이 드물기 때문에 위 논리대로 보기 힘들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대중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 심리를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의 유족들 중에 아직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주 4·3 사건이 ‘공산폭동’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사건 직후 무장대 측의 주

8)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p36.

공격 대상이었던 군·경측에서 “외부 공산주의자들의 개입으로 사태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처음 내뱉음으로써 시작되었다.⁹⁾ 미군정에서도 1948년 5월 5일 제주시찰 직후 “제주도 외에서 온 공산분자들이 일부 청년을 오도(誤導)하여 산에 가서 폭동을 일으켜 관리와 선거를 지지하는 자들을 위협 살해하고 있다.”¹⁰⁾는 딘 군정장관의 발언을 통해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일으킨 반란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4·3 사건 당시 제주주둔 9연대장 장국이었던 김익렬이 회고록을 통해 “미국 본토로부터 제주도 사태 발생에 대한 문책을 받은 미군정은 국제 여론을 무마하고 사태를 조속히 진압하기 위해 전략상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의를 당시 제주주둔 경비대 책임자인 자신에게 직접 했었다.”는 증언을 남겼다.¹¹⁾ 그는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길 거부하다가 딘 장군에 의해 해임됐다. 나중에 그는 4·3의 기록이 너무 왜곡되고 미군정과 군·경의 실책과 죄상이 은폐되는데 공분을 느껴 회고록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해당 회고록은 지금도 4·3 사건 초기의 미군정이 펼친 토벌정책과 군·경의 대응전략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다.

제주 4·3 사건 발발 이후 50년 동안 사건을 짤막하게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으나, 70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인정했다. 사건이 금기시된 50년 동안 관련 기록은 군·경 및 미군정 측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 관리의 4대 원칙¹²⁾을 훼손당했다. 이는 곧 한국의 기록 문화가 퇴보(退步)한 모습이다. 기록 문화가 퇴보함은 곧 민주주의의 퇴보를 뜻한다. 한국의 기록 문화가 퇴보할 때마다 항상 민주주의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제주 4·3 사건뿐만 아니라 독재정권 시기에도 최근 박근혜 정부 때도 기록을 당시

9) 1948년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제주비상경비사령관으로 특파된 경무부 공안국장 김정호가 “반도를 체포해다 문초해보면 대개 백정들로, 좌익계열에서는 일부 잔학한 살인을 감행하기 위해 남조선 각지로부터 백정을 모집하여 살해하는 도구로 쓰는 형편.” (『동아일보(東亞日報)』, 1948.4.30.)이라는 터무니없는 낭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제주출신으로 사태 前 제주 감찰청장 역임)은 제주 현지 시찰을 마치고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동에 팔로군이 참가하였다느니 기관총을 가지고 있느니 하는 풍설이 있었으나 그것은 전연 낭설이고 폭도들은 주로 제주 도민이고 그 수효는 약 300~400명으로 추측되고 있다.” (『조선일보(朝鮮日報)』, 1948.5.6.)고 밝혀 풍설로 떠돌던 외부 개입설을 부인했다.

10) 김관후 (2014.8.7). ‘박진경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다’. 제주의 소리.

http://m.jes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0370&sc_code=&page=3&total=72

11) 제주특별자치도 (1988). 김익렬 장군 실록 유고 : 4·3은 말한다. p307~308.

1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권의 입맛대로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기록은 단순히 한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을 기록으로 남긴 것에 끝나지 않는다. 남긴 기록을 통해 업무가 어떻게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업무 수행을 하면서 발생한 실수 등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학습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학살 사건 또한 기록되었기에, 기록된 사건 내용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역사 속 기록을 통해 제주 4·3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이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형태로 비극을 방지하는 방법을 만들게 될 수 있었다.

제2절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이 왜곡된 배경

1. 당시 군·경 및 당시 독재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통제된 언론

당시 군·경 자료는 1차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편이다. 계엄령을 집행했을 때 선포 날짜를 틀리게 기록하고, 북촌리(北村里) 사건¹³⁾을 공비들이 자행한 것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기록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보도는 역사의 초고(草稿)다. 제주 4·3 당시 언론은 4·3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왜곡과 허위로 지면을 채웠다. 그 결과 ‘제주 4·3’은 70년 간 ‘제주 빨치산 봉기’, ‘제주 4·3 사태’, ‘제주 4·3 민중 항쟁’ 등으로 불렸을 뿐 제대로 된 이름조차 얻지 못했다.¹⁴⁾ 4·19혁명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헌법 전문)으로 규정되고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¹⁵⁾ 언론은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활동과 의사 결정에 관한 사

13) 1949년 1월 17일 당시 함덕 주둔 2연대 3대대 군인들이 함덕으로 가던 도중,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 군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동요하던 군인들은 마을 원로를 총살시키는 한 편, 마을에 불을 지르고 갈 곳 없는 주민들을 북촌리 초등학교에 모이게 했다. 그들 중 군경 가족과 지인을 열외시킨 나머지 주민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끌고 가 한꺼번에 4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주민들을 그곳에서 총살시켰다. 생존자 및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희생자 중에는 임산부와 10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14)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67>

15)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c18c4ee4b0f112dc9d3e0d

실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의 활동과 의사 결정이 경쟁 정치인, 이익단체, 정치 전문가, 일반 시민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해 ‘민의(民意)’가 반영되는 정치 체제 작동에 기여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기능(democratic function)에 충실했어야 한다.¹⁶⁾ 그러나 사건 당시 언론은 민주주의 기능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승만 정권 및 미군정의 정치적인 선전 도구와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했다. 1947년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동아일보에서는 파업 원인을 쓰지 않고 대신 “앞서 전북에서 100명, 전남에서 200명 도합 300명의 경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했다.”며 “제주도 내 이번 총파업은 전에 보지 못한 대규모적인 것으로 그 귀추가 크게 주목 된다.”고만 하였다. 또한, 미군정이 유포한 ‘남로당 중앙단 지령설’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한 예가 인공기를 단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기사다. 1948년 10월13일 동아일보는 “제주도 미국민사청장 노우엘 소좌는 10월8일 하오 1시경 성산포 20마일 해상에서 부산 방면으로 항행 중인 잠수함 1척을 발견했는데 잠수함의 번호는 ‘c53’이며 함미에는 인민공화국기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4일 서울신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미군 G-2 보고서의 붉은 바탕에 별 하나가 그려진 깃발이 서울신문에는 인민공화국기로 변해있었다. 이는 한 번도 확인된 적 없는 허위다. 괴선박 출현설은 공교롭게 토벌 작전이 시작되기 전 수차례 나타났다.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무려 군·경에 의한 학살을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 공보부(公報部)¹⁷⁾는 언론사에 지침을 내려 반란군의 행위를 묵과하는 논평이나 반역 행위에 대한 동정어린 표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군 보고에 따르면 언론에 대한 통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A. 북한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으로 불러져야 한다.
- B. 신문 원안(原案) 표현은 김일성과 북한 정부의 다른 지도자들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 C. 신문사들은 미군 철수에 관계되는 뉴스나 공론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연장된 미군 점령을 반대하는 어떠한 선동적인 뉴스나 논평도 인쇄되어서는 안 된다.
- D. 반란군의 행위를 묵과하는 논평이나 어떤 종류의 반역 행위에 대한 동정어린 표현

16) 김춘식 (2017).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 보도 관행과 방송의 민주주의 기능의 퇴행 :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폭로’에 관한 보도 분석(1992년~2012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3), 79-157. p87.

17) 정보·법령 및 조약의 공포·언론·보도·정기 간행물·선전·보도 선전을 위한 영화 및 예술과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掌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도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 E. 남한에서의 마찰이 ‘잔혹한 민족 학살’ 임을 의미하는 표현은 그것이 반란군과 국군 사이에서 동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피되어야 한다.
- F. 집필자는 국가와 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중상과 욕설이 담긴 진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¹⁸⁾

육지와 동떨어져 있는 제주 해안을 이미 봉쇄한 상황에서 정부가 언론마저 장악한 뒤, 제주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언론이 통제됨으로써 제주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보도되었고, 육지에서 제주 초토화 작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¹⁹⁾ 이전에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토벌 작전에서의 민간인 희생, 그리고 이에 대한 토벌대의 책임 등을 지적하는 기사와 르포가 실렸지만, 1948년 말부터는 이에 대한 기사가 적어진다. 그보다 유격대의 공격 때문에 곤란해지거나 귀순한 유격대원의 후회 및 재생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기사가 많아졌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북괴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유언비어가 신군부와 그들이 통제한 언론보도에서 시작된 것처럼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강경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언론이었다. 이렇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의도한 대로 언론이 활동하자, 그들이 쓰는 ‘폭도’라는 용어조차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민일보 취재팀이 폐낸 『4·3은 말한다』 제5권에 나온 남원면(南元面) 주민 김학배씨는 “폭도들은 우리 집에도 들이닥쳐 어머니에게 창을 들이밀면서 ‘쌀을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가해자가 쓰던 언어가 피해자 언어로 전이(轉移)된 것이다. 강원대의 이관열 교수는 「제주 4·3 사건 보도의 언론사적 의미」란 글에서 “해방 후 한국 언론이 미군정하에서 우리의 언론 철학을 수립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동족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청난 범죄에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보도는 한국 언론의 불행한 출발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 자료는 사실상 왜곡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2. 왜곡된 기록 수집 이유 및 구술 기록의 중요성

18)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주한미군사령관이 육군정 정보국에 - 국가보안법/국군조직법 <1948년 12월 5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p263.

제주 4·3 사건과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구술 기록이며, 회고록과 공공기록도 이에 포함된다. 구술 기록은 민간인 학살 사건 및 제노사이드 관련 기록을 수집할 때, 가장 많이 수집되는 기록의 형태다. 대체로 군·경과 같은 정부 기관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기록의 주체이기 때문에, 기록이 왜곡되거나 아예 말살되는 등 기록문화가 퇴보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 4·3 사건도 마찬가지다. 당시 가해자에 속하는 군·경에서 작성한 공공기록 및 회고록의 대부분은 자신의 업적을 좋게 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였다. 허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당시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왜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과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 피해자 입장에서 나온 증언이 필요하다. 또한, 구술 기록은 기존 문헌 자료의 양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기록 속 내용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제주 4·3 사건 기록의 대부분이 구술 기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구술 기록도 개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비판이 따라 붙는다. 사람의 기억은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증언한 내용이 기록된 구술 기록 또한 100% 정확하기 힘들기 때문에 완벽한 구술 기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기존의 구조 중심적 역사학에서 배제하거나 단순화한 실제 인간들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술 기록은 과거에 대한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경험하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다. 따라서 구술 기록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은 주관적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²⁰⁾ 또한 구술 기록의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통해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모든 측면을 통해 구술이 지닌 역사적 사실의 다양성(multi-vocality)이 구술 기록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²¹⁾

20) 이용기 (2002). 연구동향 :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364-384. p366~367.

21) 윤택림 (2001).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213-234. p232.

제3절 미국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

1. 당시 미국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제주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미흡한 부분 중 하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의 대한 정책과 중앙, 그리고 제주도의 상황을 유기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는 박명립의 글이다. 박명립은 주한미군사령부 및 군정청 문서를 활용해 미국 미군정의 정책이 4·3 항쟁 발발과 이후 발생한 제주도민의 희생에 투영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²²⁾ 박명립의 연구 이전에도 존 메릴이 미국 문서를 통해 4·3 항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성격을 규정했지만, 그는 좌·우익의 대립을 4·3 발발의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한 채 미국의 정책과 역할은 간과했다.²³⁾ 그 외 관련 글로는 문순보, 강성현, 허호준의 논문이 있다. 문순보는 4·3 항쟁의 원인과 제주도민 피해, 4·3의 성격을 미군정의 정책과 관련시켜 ‘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즉 미군정의 물리적 탄압이 좌익의 섬이라는 편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²⁴⁾ 하지만 구체적인 논거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성현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주 4·3을 억압과 단선, 단정에 대한 자발적인 저항 과정에서 확대된 대량학살론으로 규정하고 군경토벌대의 학살 이데올로기를 추적함으로써 민간인 학살의 실상을 규명하고자 했다.²⁵⁾ 허호준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수집된 미국자료와 더불어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미 군사고문단원의 증언을 토대로 4·3항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5·10 총선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진압작전의 최고 결정자인 미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이 4·3 항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22) 박명립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3) 존 메릴(John Merril)의 「The Chejudo Rebellion」은 1975년 하버드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 온누리, 1988에 수록되어있다. 4·3 관련 연구 성과를 가운데 국내외를 통하여 학술적 성격의 첫 논문인 존 메릴의 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1975년 제정된 미국정보공개법에 따라 비밀 해제된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 및 군정청 문서를 활용해 작성되었다.

24) 문순보 (2001).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 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5) 강성현 (2002).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 대량학살시기(1948년 10월 중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행동을 취했는지를 완전하게 입증하기 힘들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미군정 및 미국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진압은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군정 관련 문서들,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미국의 개입 수준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2. 미군정 기록 속에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개입 증거

일단 1948년 3월 3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한국인들에게 선거의 의의를 강조해 투표는 성년에 달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투표를 포기하는 자는 불참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을 비판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성명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⁶⁾

4월 2일 산하 지휘관들에게 전문을 보내 공산주의자들과 기타 선거반대세력에 의한 선거 방해 시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가오는 한국의 선거는 우리의 점령 기간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공정 선거를 통해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이번 노력이 성공하는 것은 미합중국 사절단의 성과에 기본적인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소수 반대 정당, 후보 선출 희망이 없는 단체들의 상당한 반대가 예견된다. 오늘까지의 사건에 근거해 선거 수행과 관련한 UN 한국 임시 위원단의 상당한 반대도 예견된다.

군정장관은 미국의 선거 감시 집행에 책임이 있다. 이런 목적으로 군정장관과 그의 대표들은 민간인과 감시자로서 활동하기 위한 인력과 교통수단을 포함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어떤 군부대라도 직접 연락할 것을 승인받았다.

.....순찰은 선거 당일 일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각각의 지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영되지만 당일에는 질서 회복에 필요하지 않는 한 군복을 입은 미군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²⁷⁾

26) UN한국임시위원회 (1984), UN조선위원회 보고서 (임명삼 역). 파주 : 돌베개. 1984, p63.

27)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주한미육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정청이 남한 선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면 미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를 성공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5·10 선거의 성공적인 실시가 우선시되어야 했고, 이를 관철(貫徹)시키는 것은 그들의 의무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항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정은 곁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대단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미군정은 선거감시활동을 벌이는 UN 조선임시위원회를 안심시키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제주도에서의 성공적인 선거 실시를 위한 강경 진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당시 주한미군 작전참모부 슈(Schewe) 중령이 작성하여 작전 참모 타이센(Tychsen) 대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4·28 평화회담의 실체와 제주도 사태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 A. 59미군 군정중대장이 현재 제주도에 있는 병력을 확실히 통솔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하다.
- B. 공산주의자들과 계릴라 세력이 오름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활발한 작전이 요구된다.
- C. 경찰과 대동청년단원들이 너무나 정력적으로 행동해왔기 때문에 양민들은 반경찰적이고 따라서 그들은 경찰에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공포심 때문이다.
- D. 현재 계릴라의 숫자는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로 추정되며 소단위로 넓게 산재해 있다.
- E. 제주도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부대들 간에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양질의 라디오통신 장비가 필요하다.
- F. 1948년 4월 28일 이전의 작전은 situation warrants(상황이 급박하여 영장 없이 구금, 가택수색 등을 행하는 것)를 행할 만큼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제주에 대한 미군정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당시 군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의 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거와 관련해 공포한 명령들 <주한미육군고문관실 1948년 4월 9일자 급송문서 제85호>, 『제주 4·3 사건자료집』 9, 2002, p171

1948년 5월 초 나는 ‘경무부장’ 조병옥, ‘국방경비대 사령관’ 송호성 등과 함께 미군정 장관인 던을 따라 비행기 편으로 제주도에 갔던 일이 있다. 그것은 1948년 4·3 봉기 아래 날로 높아가는 제주도 인민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였다....우리 일행이 서울에 돌아왔을 때다. 당시 미 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는 ‘경무부장’ 조병옥과 ‘국방경비대사령관’ 송호성을 따로 불러놓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 모슬포에다가 비행기지를 만들어놓았다. 미국은 제주도가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고 제주도는 확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²⁸⁾

5·10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4·3 봉기가 일어난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인 관리는 투표소에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미군들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군들은 피습 지역의 현장 조사, 선거 여론조사 활동, 투표함 수송 및 점검, 정보 수집 활동, 미군기에 의한 정찰 활동 등으로 선거 현장에 뛰어들었다. 투표함 탈취를 막기 위해 미군이 직접 투표함을 수송한 마을도 있었다.²⁹⁾ 결국 5·10 총선거가 실패로 돌아가자, 미군정은 6사단 20연대장 브라운(Brown) 대령을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파견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검거작전에 나선 경비대와 경찰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제주도의 모든 고문관들과 주둔 경비대, 경찰 등 제주도의 모든 작전을 지휘 및 통솔하는 최고 지휘권을 맡은 브라운 대령은 1948년 5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했다. 브라운 보고서는 「1948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의 활동 보고」라는 제목으로 1948년 7월 1일에 제출되었다. 보고서에는 4·3 사건 발발 초기 미국 및 미군정의 4·3 사건에 대한 시각과 대책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문건이다. 주요 사안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운은 계속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첫째, 최소한 1년 동안 제주도에 경비대 1개 연대를 주둔시킬 것, 둘째,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이고 훈련된 경찰로 재조직할 것, 셋째, 폭동의 재조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식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넷째, 제주도 행정기관을 가능한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들 것.”을 추천하였다.³⁰⁾

28) 고려대학교, (사)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2004). 안재홍(安在鴻) 유고집. 서울 : 고려사학회.

29)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제2권. 용인 : 전예원. p208-212.

30)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from 22 May 48 to 30 June 1948”, NARA, RG 338, Entry.11070, Box. No. 68.

브라운 대령은 4·3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가 경찰의 탄압임을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실제 인식 및 대응을 달리 했다.

저는 제주도 폭동의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제주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절대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점은 제주도가 공산분자들의 기지로 조직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의 야만성이나 정부의 기능이 비효율적이어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비판은 섬에서의 공산분자들의 의도에 비하면 부수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이는 미군정의 정책과 당시 4·3 사건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1949년 4월 4일 주한미대사 무초(Muccio)가 이승만을 만나면서 “한국은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만연하는 게릴라 도당을 제거하고 보안군을 훈련시킴으로써 남한에서의 입장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했다. 무초의 강경한 진압 작전을 암시하는 발언은 4월 9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4·3 항쟁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나타났다.³¹⁾

제주도가 남한에 혼란을 퍼뜨리고 테러를 가하기 위한 소련의 주요 노력의 장소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소련의 통제를 받은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뿐어져 나오는 선전의 본질로부터 분명해진다. 이것은 제주도 북쪽의 한반도 육지부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지속적이고도 유사한 작전으로 지속되었다. 대한민국 후방 지역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소요와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한국 무대에서 영속시키고자 했던 대량학살의 싸움에 38선의 방위군 부대들을 소모시키지 말아야 한다.

소련 요원들이 큰 난관 없이 제주도에 침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성모 장관은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북한으로부터 소형 어선 편으로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모는 한국 애한 경비대(the Korean Coast Guard)가 제주도 해안을 정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해안 경비대 함정의 소규모 승무원으로서는 빈틈없는 봉쇄가 불가능하다

31)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 RG319, Entry.57, Box. No.59, NARA.

고 주장했다. 그것이 국무총리과 신성모 장관 사이에서 특히 국회의 토론에서 논쟁거리로 존재했을 동안 제주도 주위에 소련 함선과 잡수함들이 맴돌고 있다는 지속적인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다.

미군정은 좌의 세력과 4·3 항쟁의 관계에 대해 남로당의 항쟁의 주도 세력이라 인식했다. 제주도 현지 고문관이었던 웨솔로스키(Wesolowsky)와 피쉬그룬드(Fischgrund)는 당시 외부 세력이 침입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무초가 위 발언을 한 이유는 이승만 정권의 제주도 토벌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제주도를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일종의 시험 무대로 삼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군 측에서 희생자 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있었다거나,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하였다.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는 사실 조차 전혀 모른다고 했다. 허나 그들은 제주도의 상황을 모두 보고받았으며, 희생자 수와 무기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 미국으로서는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의 격전지였던 남한, 특히 제주도를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행동이었다.

제4절 제주 4·3 사건 구술 기록의 중요성

1.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구술 채록 작업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이후, 4·3 사건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허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4·3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시 침묵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술 채록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1960년 4월 19일이 아닌 1987년 6월 항쟁 이후다. 4·3 사건 관련 기록은 수집하기 매우 어렵다. 가해자에 속하는 군·경 및 미군정의 자료는 고사하고 당시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제주도민들의 증언조차 얻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 4·3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기에 증언 채록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인력 및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80년대 후반부터 급히 시작하게 된 것이다. 구술 채

록 작업은 4·3 연구소와 제민일보 취재반, 그리고 4·3 진상규명위원회 이 세 단체가 각각 연구 및 조사를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4·3 연구소부터 살펴보면,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2년까지 소규모로 시작되었다. 연구소에서는 구술 채록 작업을 하기 전, 구술 채록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상이하게 나오는 증언을 교차 확인하고 신문이나 기타 자료가 있을 때는 증언과 대조하면서 개연성을 확보하는 등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³²⁾ 4·3 연구소는 구술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구술자가 말하는 그대로 모두 옮겨 기록했다. 이름만큼은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극심한 상태에서 이름을 밝히고 증언을 한다는 것은 곧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비록 익명성은 기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긴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결과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아쉬운 점은 증언 대상의 대다수가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4·3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서도 구술 채록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대상이 군·경 및 미군정 관련자들, 그리고 당시 우익단체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 대다수가 소재 파악이 힘들거나, 소재를 파악하여 찾아가도 증언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4·3 연구소는 구술 채록을 하면서 인력 및 재정난으로 인한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위에 언급한 문제점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녔다. 연구소의 구술 채록 작업으로 인해 얻게 된 성과로는 제주 4·3 사건의 실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제주 4·3 사건의 기록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제민일보 취재반은 『4·3의 증언』과 그 뒤를 이어 연재한 『4·3은 말한다』를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했다. 구술 기록은 100% 객관적일 수 없지만, 취재반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만을 밝힐 수 있게 질문하였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마다 사실인지에 대한 검증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4·3의 증언』과 그 뒤를 이어 연재한 『4·3은 말한다』를 책으로 엮어 낼 때는 신문 연재 도중 생략한 증언자 및 인용 자료 등을 모두 각주로 넣어 밝혔다.

32) 박찬식 (2006). 4·3 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 61-95. p66.

마지막으로 4·3 위원회는 정부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4·3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시행한 일종의 프로젝트였다. 정부에서 주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보다 증언 채록 대상을 선정하기 어려워했지만, 군·경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을 얻기 수월하여 다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전문위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고, 작업 이후 기록을 정리하는 일 또한 본인이 1주일 안에 정리하도록 하였다. 공공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단계를 하나씩 밟아 나가는 형식이다. 위원회 또한 정부에서 수행하는 일종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형식으로 작업을 수행했다. 이 형식은 자칫하면 원칙에 너무 얹매여 매우 더뎌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위원회에서는 매주 7~8명으로 한 달에 30명이라는 인원을 정해서 30명의 증언을 채록하고, 그 후 정리는 1주일 안에 끝내게 만들었다. 이런 강행군은 세심하게 기록해야 하는 구술 기록에 좋지 않다. 결국 위원회의 구술 채록 작업은 구술 기록이 아닌 그저 제주 4·3 사건 당시 증언에 대한 근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2. 구술 채록 작업을 통해 살펴본 구술 기록의 중요성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당대 제도 속의 공식적인 행위들만 남기기 쉬우며, 제도권 밖의 비공식적인 일상 행위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근 통신 및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종이를 기반으로 한 문서에 글자로 의사소통을 하던 것이 이제 전자 기기를 통해 음성이나 영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공백은 구술 기록이 메운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³³⁾ 즉, 구술 채록은 살아있는 기억에 기반을 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자 과거 기억의 파편화된 조각들을 남기는 작업이다. 이는 구술 채록이 파편화된 기록의 빈틈을 메워주는 의미 있는 작업을 뜻한다. 그러므로 구술과 기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구술 채록은 하나의 완벽한 과거 사실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닌, 이러한 파편화된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³⁴⁾ 기록학과 연계시키면, 기록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인 행위의 배경 및 인과 관계를 파악하거나 특정 사안의

33)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1998).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p367~375.

34) Francois Rochat (2004). "Psychology, Archives, and Memor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p2~4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기록 속에 수록된 내용을 검증하거나 사실 내역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³⁵⁾ 기록학, 역사학, 인류학, 사회학 등 학문들마다 구술에 대한 관점이나 접근법도 다양하다. 이 모든 것은 구술 채록 작업이 적어도 문자화된 기록이 부족한 재난이나 학살 사건 등을 기록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음을 의미하며,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을 수집할 때 구술 기록도 중요함을 보여준다.³⁶⁾

35)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p97.

36)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55-197. p159.

제4장 제주 4·3 사건 기록 수집 방안

제1절 퇴보된 기록 문화 속에 남겨진 기록 복구

민간인 학살의 대부분은 군, 경찰 등 국가 조직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과거사정리기본법의 통과 의미가 있다. ‘진상규명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명예 회복 →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과거청산의 일련 과정에서 진상규명은 이후 이어지는 과정의 첫 출발이자 기초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인 학살은 가해자가 이미 죽거나 명확히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에 진상규명이 더욱 중요하다. 진상규명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간인 학살 기록은 국내보다 외국에 더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는 4월 혁명이나 박정희 정권 수립기 등 정치적 격변기가 일어날 때마다, 문서의 무단 폐기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등 퇴행적 기록 문화가 수십 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³⁷⁾ 중간에 진상규명 운동이 시도된 적은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져갔고, 그 열망을 통해 이승만 정권 시절의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났다. 그 해 5월 23일 국회에서 당시 거창과 함양의 양민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에서는 “불과 몇백 명이 죽은 지역도 조사하는데, 수만 명이 희생된 제주 지역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분노의 여론이 일어났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자,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국회 조사단의 조사 대상 지역에 제주 지역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6월 6일 단 하루, 그 하루 동안 조사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제주도에서는 이 하루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나, 국회 조사단이 제주도에서 단 하루 동안 활동하며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하기란 어려웠다.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준비가 받쳐줘야 했는데, 조사단이 도착할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닷새뿐이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회 및 제주 내 언론에서 급히 진상규명에 대해 알림으로

37) 김득중, 김동춘 (2005). 민간인 학살 기록현황과 수집·관리 방안.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05-122. p105.

써 신고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전 지역에 알려지지 못 한 채 마감되었다. 게다가 접수받은 신고서는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실제 사망자 숫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6월 6일 조사단이 도착하여 활동을 한 시간은 오전 11시 55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단 6시간 왔다 가도 조사는 조사지만 증언청취한 실질시간은 4시간 남짓. 그것도 道의사당에 찾아갔었던 유족들만 상대. 뒤미처 간 유족 한 분은 그마저 「피곤하니까」 못만났었다고憤히 여기는데 — 그 증언하려던 내용이出色 — 가족이 폭도라고 그 부친을 잡아다 앗아버릴려 하니 늙은 老親이 나서서 餘命이 길지 않으니 대신 罰을 받겠다고 하여 결국 목숨을 罰條로 바쳤다. — 어디 原始時代나 「스마르라」 山中에서나 있음직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사실 —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염연한 현실이었으니 아마 다시는 없어야 할 악몽일 따름.

심지어 조사단 중 한 명은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 경찰 감찰청장으로 재직했던 사건 진압 당사자였고, 조사 중에도 증언자를 마치 죄인 다루는 것처럼 대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문제점이 많았던 국회 조사단이었지만, 1,917명의 희생자 명단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촉구도 하였다. 그러나 이 진상규명 운동은 얼마 가지 않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후 30여년을 다시 암흑 속에 파묻히게 되었다.³⁸⁾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또한 이제야 관리가 시작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만 봐도 아직도 기록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제일 기본적인 수집 정책조차 기증 절차만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다. 제주 4·3 사건과 같은 민간인 학살 기록을 살펴보면 주로 언론 보도, 공문서, 구술 기록이 대부분인데, 관련 정보를 찾으려면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및 대통령 도서관, 의회 도서관 등에서 찾아보는 편이 좋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공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안 양식 하나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군정 측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작성된 자료를 남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 미군정 자료는 사태

38)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제3권. 서울 : 전예원. p299~300

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작성 주체가 곧 탄압 주체였다는 점은 진실 은폐 및 왜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³⁹⁾ 국내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민간인 학살 기록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는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군사편찬연구소가 있는데, 각각 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국가기록원은 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소장 중인 관련 기록에 왜곡된 기록 정보 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해외 사료 수집을 많이 하였으나 내용을 확인하려면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일반인 이용자가 기관 내 소장 기록을 확인하기 다소 어려운 편이다.⁴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 4·3 아카이브가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기증이라는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의 경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4·3 관련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로 규정되고 있다.⁴¹⁾ 혹자는 전쟁 및 학살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을 사실이라 기록하는 것 자체에 의문이 든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기억과 사실을 더듬어가면서, 그것이 폭동인지 항쟁인지 혹은 차마 말 못할 수난인지 규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쉽게 놓을 수 없다.⁴²⁾ 브루스 커밍스도 “해방된 한국에서 제주만큼 정치적 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장소는 없으며, 한국전쟁기 동안 제주보다 더 조용했던 곳은 없다.”고 했다. 제주는 전후 한국 정치의 확대경이자 현미경인 셈이다.⁴³⁾ 이러한 의미에서, 당시 제주의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록이라면 무엇이든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1990년부터 제민일보 4·3 취재반에서 4·3 사건에 대해 심층보도를 한 내용을 일부 다듬어 출간한 『4·3은 말한다』가 있다. 2003년에 나온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또한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는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MBC에서 방영된 특별기획 드라마인 <여명의 눈동자>다. <여명의 눈동자>는 1943년 일제강점기 말부터 1953년 6.25

39) 정용욱 (2001). 제주 4·3 연구와 미군정 자료. 4·3과 역사. 제주 : 제주 4·3 연구소. p186.

40) 김득중, 김동춘 (2005). 민간인 학살 기록현황과 수집·관리 방안.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05-122. p115~116.

41) 정용욱 (2001). 제주 4·3 연구와 미군정 자료. 4·3과 역사. 제주 : 제주 4·3 연구소. p186.

42) 박필현 (2015).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 : 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3(0), 225-250. p227-228

43) Bruce Cummings (1990).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II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 1945-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251

전쟁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총망라한 작품으로, 그 시대를 굉장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림 7> <여명의 눈동자> 중 제주도에서 작별하는 모습

그려내어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당시 교과서에는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던 제주 4·3 사건을 처음으로 매체에서 다룸으로써, 일반 대중에 제주 4·3 사건을 알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우리는 아직 독립되지 않아수다! 우리 할아

버지를 죽인 일제 경찰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는데…“라는 어느 소녀의 절규, “양민들은 나오지 맙서! 민족을 나누는 5·10 단독선거는 막아사주.”라는 청년의 외침 등을 통해 4·3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다.⁴⁴⁾ 초토화 작전을 계획하는 미군 장교와 군경 토벌대의 혹독함을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다. 당시 미군정의 이 중성을 뛴 모습 또한 쉽게 다룰 수 없었던 소재였기 때문에,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독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퇴보된 기록 문화 속에서 기록을 복구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해야겠다. 이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생존해 있는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증언을 채록하는 것이다. 관련자의 증언을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취재하거나 관련 자료를 기증하는 것이기에 결국 기증이 수집 경로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증을 통해 받은 자료들만으로는 4·3 사건 관련 기록을 구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증 외 다른 방법들도 고려해서 수집 정책을 제대로 구축해야만 한다.

44) 양조훈 (2011). “4·3 실상 처음 보여준 드라마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87>

제2절 왜곡된 기록의 수집

사전에서는 왜곡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⁴⁵⁾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하지만 왜곡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자가 직접 평가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자 또한 주관이 달라서 평가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즉, 왜곡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이다. 기록도 마찬가지다. 모든 기록에는 기록자의 주관이 어떻게든 개입되게 마련이다. 그에 우리는 기록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기록이 지난 객관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그 실체가 온전히 전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자의 가치관이나 사상이 덧대어진 상태로 남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록자에 의해 기록된 대상이 재창조되기에 모든 기록물은 진실로 보기 힘들다.⁴⁶⁾ 그래서 왜곡된 기록이라 지적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 평가한 것 이기 때문에 실제로 왜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왜곡에 대한 기준부터 정립하고 해당 기록을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⁴⁷⁾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중 왜곡된 사례는 대부분 군·경 및 당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의해 조작되거나 은폐된 경우다.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은 제주도에 병력 총 60,668명을 배치하고 본토결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패전과 더불어 일본군은 요새화된 한라산의 진지와 막대한 무기탄약을 산중에 매몰하고 철수한 바 있었다……. 제주인민해방군은 일본 군의 철수 시 산중에 매몰한 무기를 모집하여 이것으로 무장하고 군사훈련은 팔로군 출신들이 담당하여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으로 자못 그 기세는 당당하였다. 이들의 무장병력은 500명에 달하였고 이에 부화뇌동한 수도 1,000명에 이르러 총수 1,5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⁴⁸⁾

45) 표준 국어대사전

46) 서혜진 (2006). 기록으로서의 사실과 허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p6~7.

47) 이진룡, 임진희 (2016). 담론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전략 연구 : 5·18 담론의 기록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8), 141-179. p160.

48) 國防部 戰史편찬위원회 (1967). 韓國戰爭史 제1권—해방과 건군. p437

위 글은 1967년 국방부에서 펴낸 『한국전쟁사』에 나온다. 요약하자면 첫째, 폭도들은 일본군이 한라산에 매몰한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했고 둘째, 그 숫자는 1,500명에 이르렀으며 셋째, 팔로군 출신이 군사 훈련을 담당하면서 중국에서 사용한 유격전을 지도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관련 자료들도 대부분 이런 맥락으로 무장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기존 자료와 미군의 기밀문서 등을 분석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 했던 존 메릴도 “주력 500명 가운데 반수는 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칼·낫·죽창·사제수류탄과 폭발물·곡괭이·삽 등으로 무장했다.”고 하였다. 무장대가 일본군이 매몰했던 총을 일부 찾아내 무장한 것은 사실이다. 해녀의 도움을 받아 바다 속에 버려졌던 총기와 탄약 등을 건져내 활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제주 4·3 사건의 초기 상황을 보면 위 글 속에서 표현한 무장대의 모습보다 훨씬 빈약한 상태였다. 4월 3일 당시 새벽 성산포지서를 포위했던 40명 가량의 무장대는 99식 총 1정, 공기총 1정, 그리고 갈고리·죽창·몽둥이 등만 소지하고 있었다. 남로당 출신 이운방도 “궐기 당초의 무기조달 상황을 보면 소총이 약 30정 정도였다고 하며 대정면에는 소총이 3정뿐이었다.”⁴⁹⁾고 하였다. 1948년 6월 제주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벌였던 조선통신 특파원 조덕송이 쓴 현장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토벌군이 ‘대정면 인민군사령부’를 습격해서 압수했다는 무기를 살펴봤더니 곤봉, 구시대의 엽총, 일본도, 죽창, 철창 등이었다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무기, 이로써 최신 무기에 생명을 걸고 버티고 나서야 할 절대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⁵⁰⁾라며 의문을 제기한 적 있다.

위 왜곡 사례를 제외한 일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로, 보통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료의 원본을 가져다 원본의 구성을 다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기록을 왜곡한다. 예를 들면 제주 4·3 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 진실연대)에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며,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또한 조작 및 왜곡됐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4·3 진실연대는 『제주 4·3 진실 도민보고서』를 통해 제주 4·3 사건이 폭동·반란인 이유 15가지를 기록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을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였다. 4·3 진실연대의 신구범⁵¹⁾ 상임대표는 제주 4·3

49) 제주 4·3 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함수다 I. 서울 : 한울. p225

50) 조덕송 (1948).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7.

51) 제29·31대 제주도지사

사건이 건국 이전의 진압과 건국 이후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반란군과 정부군 교전에서 무고한 많은 도민과 군·경의 불행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폭동·반란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4·3 진실 도민보고서』에는 ‘재심사가 청구된 부적격 희생자 107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본적, 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 재판 기록, 4·3 사건 전후 주요 활동까지 같이 명시되어 있다.⁵²⁾ 이 경우는 자료를 조작 및 왜곡하지 않았으나, 자료를 왜곡의 목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왜곡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쓰이는데 활용한 사례다.

위 사례와 비슷한 일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나 반란인가 혹은 항쟁인가에 대한 논쟁의 양상으로 인해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기준에까지 영향이 미쳤다. 결국 4·3 위원회는 희생자 선정 문제를 포함해서 제주 4·3 사건 관련 문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 위원들 간 ‘합의’에 기초해야만 했다. 희생자 선정 기준 관련 문제는 제주 4·3 사건 가해자 측에 속하는 단체 출신 사람들의 유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4·3 위원회가 희생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고, 이는 4·3 위원회에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이 나오게 만들었다. 이 기준으로 인해 희생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인정’ 하였고, 해당 유족으로 하여금 신고를 철회시키도록 만들었다. 즉, 해당 유족들에게 희생자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 “신고 철회했음”을 확인하는 도장까지 받았던 것이다. 신고 철회당한 희생자의 위폐는 위폐봉안소에서 철거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별 과정’을 통해 희생자임을 ‘인정’ 받아야 했으며, 그들로 대표되는 역사적 사실 또한 국가가 인식하는 제주 4·3 사건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⁵³⁾ 이는 국가에서 일련의 선별 과정을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공개 혹은 비공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제주 4·3 사건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으로 ‘국가 폭력’이라 인정하면서, 극우 단체에 의한 왜곡된 주장들이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제주 4·3 사건은 폭동이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를 들고 마치 제주 4·3 사건이 진짜로 폭동이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사극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 속 내용이 진짜 역사라 여겼던 사람들처럼, SNS나 웹상에서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라 주장하는 글을 접하고

52) 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6

53) 고성만 (2008). 4·3 위원회의 기념 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158-187. p166.

이를 사실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는 필시 방지해야 하는 일이다. 기록이 왜곡되는 것은 곧 역사의 왜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카비스트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는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을 반드시 신빙성을 갖춘 자료들로 엄선하여 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왜곡된 기록은 쓸모없으므로 반드시 폐기해야만 한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사실만을 담은 기록과 왜곡된 기록을 비교하면서 기록의 왜곡 양상과 왜 기록을 왜곡해야만 했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려면 우선 그 동안 판결문, 언론 보도, 가해자 측에서 작성한 자료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자료 등 왜곡된 기록들을 모두 수집해야 한다. 왜곡된 기록을 수집할 때 왜곡된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기록을 분류할 때 왜곡된 기록을 따로 모아 보관해야 한다.

제3절 미국의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의 수집

제주 4·3 사건 관련 미군정 자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한미군사령부 정보부가 편찬한 각종 정보 보고서류다. 그 중에서도 정보부(G-2)와 직속 방첩대가 가장 중요한 부서였기 때문에 이들이 남긴 보고서류 또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미군정, 군·경의 군사적·정치적 대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미군정에서 기록한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 중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또한 미군정이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주둔미육군군정청(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특별감찰실의 넬슨 보고서도 제주 4·3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는 사건 발생 이전에 미군정이 제주도에서 자행된 부정부패 및 경찰 테러 등 사건 발발의 원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6년 한국 산업 노무력과 임금 조사」는 해방 직후 제주도의 사회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넬슨 보고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⁵⁴⁾

위 자료들을 포함한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이 가장 많이 소장된 곳은 NARA다. NARA에는 생산 기관을 기준으로 한 문서군(Record Group; RG) 개념을 사용하여 온갖

54) 정용욱 (2001). 제주 4·3 연구와 미군정 자료. 4·3과 역사. 제주 : 제주 4·3 연구소. p191.

기록을 분류 및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이 들어 있는 주요 문서군은 아래와 같다.

	문서군	설명
1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t. of State (국무부 일반 문서군)	미 국무부 산하의 각 부서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모여 있는 문서군으로, 미국의 대한 정책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다.
2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육군 법무감찰 문서군)	육군 소속 군인들의 전쟁 범죄를 취급한 문서들을 모아둔 문서군으로, 대부분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을 다루고 있다. 국군이나 유엔군이 가해자인 경우, ‘가해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거나 ‘정보에 의하면 국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표현하였다.
3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육군 참모부 문서군)	RG 338, Records of U.S. Army Command, 1942-(미 육군사령부 문서군, 1942-)D와 함께 한국 관련 문서가 다량 소장되어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문서군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ntelligence Documents(일명 “ID 파일”) ⁵⁵⁾ 에는 해방 직후 좌익 관계, 민간인 학살 관계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부관부 문서)	‘1941-54년간 보고문서철(Report Files, 1941-54)’에는 다양한 전투 및 지원 부대의 보고, 한국내 미군사작전 일지, 사후 전투보고 전쟁 일지 등으로 구성된 1949-54년간 한국지휘보고서(Korean Command Reports)가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부대 역사문서철(Unit Historical File)’과 ‘1945-54년간의 점령지역 보고서(Occupied Area Reports)’도 이에 속해있다. 이 모든 문서들은 군사 활동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5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	1942-58년간 군사고문단 문서(Records of Military Assistant Advisor Group(MAAG), 1942-58)와 <주한 미군사고문단 문서 : 부관부(Records of the U.S. Milita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 Adjutant General Section)> 문서가 포함되어 있는

55) ID 파일 목록은 인덱스 박스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목록이 있다고 하여 기록도 모두 남아

	Command,/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유엔군 사령부, 주한 미군사고문단 문서군)	문서군으로, 1953-54년 동안 군사적 대한 지원 계획과 관련된 건설, 재건 및 군사 원조 관련 서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들과 정책 · 집행의 포고 · 이행과 관련된 훈령 및 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표 3〉 NARA 한국 관련 주요 문서군

사진실에도 관련 자료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으나, 원하는 자료를 얻으려면 열람 신청 후 일일이 확인해야만 한다. RG별-주제별 인덱스(지명, 인명 포함)를 통해 검색이 되어도 제목만으로 이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 육군군사연구소(U.S.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USAMHI)에는 퇴역 군인들이 기증한 문서 · 잡물(앨범, 서신, 사진, 한국 관광 전단 등)과 함께 사진들이 공개되어 있다. 허나 구체적인 설명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기 어려운 점이 흠이다. 그 외에도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카터, 레이건 등 대통령 도서관과 신문, 잡지, 의회 청문회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의회 도서관, 미 육군군사연구소를 비롯하여 해군 도서관, 맥아더 도서관 등 군 관계 도서관, 후버 연구소, National Security Archives, 하버드 웨일즈 도서관 등 일반 학술 연구소 등 미국 내 한국 관련 자료들의 소장처도 참고할 만하다.⁵⁶⁾

미군정에서 기록한 자료들은 100%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들도 이승만 정권과 같은 가해자였기에, 사실만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4·3 사건 초기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다 해임당한 제9연대장 김익렬의 유고(遺稿)에서 미군정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져 있다. 미 정부로부터 제주도 사태로 인해 문책을 받게 되자, 국제 여론을 무마 및 사태 진압을 위해 미군정이 내세운 전략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해야 한다.’ 였다. 김익렬에게 이를 직접 제안했고, CIC 장교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해안선에서 5km이상 떨어진 중간산지대를 적성(敵性) 지역으로 간주,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아울러 초토화 작전이 미군정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는 사실 또한 유고에서 밝혀졌다. 김익렬은 이에 대한 소견을

있는 것은 아니다. 문서 자체가 분실되거나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파일에는 해방 직후 좌의 관계, 민간인 학살 관련 기록뿐만 아니라 김구 암살 배경 문서 등을 비롯하여 윤보선, 김준연, 이병석, 권승렬 등 당시 정부 고위 관리들의 이력을 정리한 개인 파일, 좌의 소요 사건과 조직원 겹거 등에 대한 기록도 들어있다.

56) 김득중, 김동춘 (2005). 민간인 학살 기록현황과 수집 · 관리 방안.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05-122. p109~114

밝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제주도 4·3 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며, 관(官)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民)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이라고 본다. 당시 제주도경찰감찰청장이나 제주군정장관, 경무부장 조병옥 씨나 미 군정청장관 딘 장군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건을 옳게 파악하고 초기에 현명하게 처리하였더라면 극소수의 인명피해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사건처리에 임하여 군정장관 딘 장군 이하 미국인들은 언어불통으로 정보를 오판해 결과적으로 우둔하기 짝이 없는 실책을 저질렀고, 자신들의 과실을 잘 알고 있던 경무부장 조병옥 씨 이하 경찰은 사건해결보다는 죄상이 노출되어 자기 모가지가 달아날까봐 진상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거기에는 공명심에 눈이 어두운 박진경 대령까지 끼어들어 사건을 원인으로부터 살펴 풀어가려고 생각치 않고 각자가 사건처리와는 거리가 먼 자기의 목적달성에만 전념하다가 대폭동화한 것이다.

1949년 7월 1일 발족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고문관 편람』을 살펴보면 고문관의 임무가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A.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유지
- B. 공격에 대비한 38선 방어
- C. 남한 내 파괴분자들의 진압과 섬멸
- D. 남한으로의 게릴라 침투 저지와 게릴라전의 격퇴 및 진압
- E. 사람, 상품과 물건의 한국 밀수출입, 해적 저지에 대비한 한국 해안의 보호

이렇게 고문관들은 지휘하지 않고 자문하는 역할로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 내 게릴라 토벌 작전에서부터 한국군의 지휘 통제에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딘 국정장관 또한 강경 진압을 주장하면서 제주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초토화 작전밖에 없다고 자신의 정보 장교들을 통해 제주 지역 책임자들에게 수시로 의사를 전달했다. 제주 진압 작전의 지휘권은 미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브라운 대령은 전달받

은 딘 국정장관의 의사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때 브라운 대령은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당시 현지 고문관이었던 웨솔로스키 중위도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고 섬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원인 치유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미군의 지휘권은 군사고문단을 통해 제주 진압 작전에 투영되었으며, 초토화 작전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임시군사문단과 방첩대 그리고 미군 59군정 중대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제주 내 상황을 지속적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제주도 학살의 전위대(前衛隊) 역할을했던 서북청년회 단원을 대규모로 파견한 것도 미군정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미군의 역할은 남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한미군사안전감정협정’에 따라 미군은 1949년 6월 완전 철수 할 때까지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미군은 각종 보고서나 정보원, 혹은 현장 목격을 통해 군·경 토벌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과도한 학살이 보여주는 잔혹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현지 고문관이었던 피쉬그룬드 중위는 무기의 수와 사망자의 숫자가 맞지 않아 송요찬에게 물어본 적 있다고 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노획됐는지 말하곤 했습니다. 항상 무기보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를 보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무기를 볼 때도 있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보고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에게 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⁵⁷⁾

G-2 보고서와 제9연대 전투일지는 1948년 12월의 작전 활동에서 대량 살상과 노획한 ‘적’들의 무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노정시켰다. 이는 군·경의 과잉진압에 따른 무고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량 학살이라는 비판을 가져왔다. 피쉬그룬드 중위 인터뷰 내용에서 사망자 수와 노획한 무기의 수가 불일치함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는 전투 교전에서 죽은 사람 숫자와 노획한 소수의 무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

57) 허호준 (2011).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 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283-319. p305.

다. 나는 절대 정확한 답변을 들은 적 없지만, 내 의문 제기 후 나온 보고서들은 사망자 수와 무기 숫자가 보다 근접한 수치로 반영됐다는데 주목했다. 이는 송요찬의 까다로운 문제(touchy point)였다. 나는 그가 지휘관들에게 무기를 가진 사람들(반도들)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고 믿었다.⁵⁸⁾

그는 그 외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거나 경찰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1948년 서울의 고문단 사령부에 있었던 고문관 새클턴(Robert G. Shackleton)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 시기 제주도에서 수천여 명의 학살이 일어났다면 들어봤을 것이라 했다. 특히 “그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은 미 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 당국은 대량 학살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확실히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미군사고문단은 제주도에 파견된 고문관들로부터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9연대의 전투 일지에는 하루에 수십여 명의 ‘적’이 죽어간 사실과 노획한 ‘무기’가 극소수의 일본제 총·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다. 미 당국은 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⁵⁹⁾ 가끔 제주 해안에 괴선박이 출현했다는 설 혹은 소련의 기지설 등 허위 첨보를 유포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제주도 토벌에 명분을 만들어주면서 힘을 실어주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미군정 자료들을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 미군정이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해방 이전 기록들은 아예 한국인의 자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아둔 상태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록된 내용이 태반이다. 또한, 당시 제주 4·3 사건을 기관별로 혹은 기록자별로 관점이 달라서 기록된 내용에도 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를 먼저 이해한 다음, 분석해가면서 기록을 접해야 한다.

제4절 구술 기록의 수집

58) 허호준 (2011).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 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283-319. p310.

59) 허호준 (2011).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 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283-319. p311.

반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작성한 기록 또한 존재한다. 문학 분야에서는 1978년 현기영이 『창작과 비평』에서 발표한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이 대표적이다. 소설 속에는 제주 4·3 사건 당시 발생했던 양민학살의 피해자인 순이 삼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전까지 금기시되었던 제주 4·3 사건이 폭로됨으로써, 소설은 금서가 되었고 현기영도 보안사령부에 끌려가게 되었다.⁶⁰⁾ 『순이삼촌』 외에도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 또한 1982년에 나온 소설로, 마찬가지로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하였다. 이 두 소설은 이전까지 폭동으로 알려졌던 제주 4·3 사건에 대해 새롭게 인식을 하게 만든 대표적인 작품이다. 하지만 그 전에도 제주민중들은 계속해서 사건을 떠올리며 전언(傳言)하였다. 이를 4·3 구비(口碑)문학이라 한다. 4·3 구비문학은 특히 제삿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발화되었다. 그 자리서 생존자들이 모여 당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한동안 ‘식겟집⁶¹⁾ 문학’이라는 용어가 일각에서 통용된 적 있었다.⁶²⁾

제주 4·3 사태를 소재로 하여 1970년대 말부터 은밀하게 소설 작품들이 쓰여졌다. 당시만 해도 이 사태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되던 때여서, 그 사태에 대한 문학적 욕구는 제삿집 담소 문학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기에 몇 편의 작품이 중앙문단에서 주목받게 되었다.⁶³⁾

『순이삼촌』은 식겟집 문학이 증언문학이며, 아울러 4·3 담론을 구전문학에서 기록문학으로 전환시킨 소설이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에 대한 실상을 폭로한 문학 작품이 속속들이 발표됨에 따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학술적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술 채록 작업 또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기록학 영역에서는 구술 기록을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록’이라 하면서, 면담자와

60) 이미영 (2018). 진실과 화해의 봄소식을 마중하며 : 제주 4·3 70주년 평화기행. 가톨릭 평론, 14, 4-9. p7

61) ‘제사(祭祀)’의 제주도 방언. 그러므로 ‘식겟집’은 ‘제삿집’을 뜻한다.

62) 김동윤 (2003).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 현기영의 「순이 삼촌」론. 탐라문화, 23(0), 1-20. p4

63) 현길언 (2001). 역사와 문학 : 제주 4·3 사태의 문학적 형상화 문제. 제주 : 탐라목석원. p252

구술자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되고 이에 주관성 및 개인성을 띤다고 설명하였다.⁶⁴⁾ 하지만 이 정의만으로 구술 기록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이 끝났다고 하기 힘들다. 기록은 형태나 유형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적 의미를 지닌 대상이므로, 구술 기록 또한 단순히 과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 연구하는 사료로서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할 수 없다.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기록을 생성하고, 기존 문헌 자료를 보완하면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 기억의 형성과 관련된 의미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⁶⁵⁾ 그러므로 구술 채록도 녹음기와 촬영 장비를 가지고 구술자의 목소리와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으로 끝난다고 하기 힘들다.

구술 채록 작업은 보통 문헌 자료에서 얻기 힘든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행한다. 국내 기록관리 기관에서도 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근 구술 채록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구술 채록 작업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다. 일단 작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구술 채록 자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구조 및 수집 틀 또한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채록된 구술 결과물 역시 단순한 시청각 기록 중 하나로만 간주되어, 구술 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및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술 기록 수집 방안을 고안할 때, 우선 구술 기록의 종류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구술 기록은 대체로 구전(口傳, Oral tradition), 구술 증언(Oral testimony),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 종류 모두 제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구술 기록을 수집할 때 구술 기록이라는 한 분류로 모아서 수집하기보다,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수집하는 편이 더 좋다. 우선 구전은 사회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질 만한 것들을 문자가 아닌 구술로 대대로 전승하는 방법이다. 이는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흔히 쓰이던 방법으로, 지금도 문맹률이 높은 나라 혹은 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술 증언은 구전처럼 대대로 전승하여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다.⁶⁶⁾ 증언자가 목격자의 입장에서 구술하는 경우도 있기에 구술 증언을 분류할 때, 소분류로 직접 구술 증언과 간접 구술 증언인지 봐야 한다. 구술 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서술한 기록이다. 제주 4·3 사건 구술 기록은

64)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 역사비평사. p32.

65)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 73-112. p84.

66)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p167.

거의 구술 증언 자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기록에서 구술 기록을 수집하는 방안은 구술 증언 자료 위주로 고안하기로 하였다.

제주 4·3 사건 관련자들을 통해 구술 채록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대다수가 기관에서 일종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관에서 구술 기록을 수집할 때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주제를 정하기’다. 제주 4·3 사건이라는 주제를 정하면, 이후 어느 방향에 맞춰 어떤 목적을 향해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를 정한다. 제주 4·3 연구소는 ‘제주 4·3 사건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정하고 기록을 수집하였다. 제주 4·3 사건에 관련하여 처음으로 구술 채록 작업을 시작한 단체이기 때문에, 구술 기록 수집 계획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하기 힘들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제민일보 취재반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구술 기록을 수집할 때, 최대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우선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수집하여 기록했다. 제주 4·3 위원회는 위 두 단체와 달리 정부 프로젝트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기록 수집 방안에 맞게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시간에 쫓겨 원래 목적인 ‘사건의 실상을 밝히면서 그 자료는 객관성을 보유할 만한 구술 기록을 수집 및 기록함’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들이 한 일은 기록관리가 아니라 그저 자료 수집 정도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와 구술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보통 기관 내 연구 인력으로만 연구자를 선정하지만, 외부 인력과 협력하기도 한다. 세 번째 단계, 외부 인력과 협력할 경우 동시에 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관 별로 다른 구술 채록 프로젝트 속 규정과 방법, 관련 서식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위 단계들을 통해 성립된 구술 채록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록 수집을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연구자와 구술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단계가 따로 정해져 있다. 구술자에게 편한 환경을 제공해야 구술도 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구술 채록 전에 연구자와 구술자가 만남으로써 라포르(Report)⁶⁷⁾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술 채록하기 전에 사건에 대한 기준 자료들을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사전 조사 단계라고 한다. 사전 조사 단계 다음은 실제 조사 단계인데, 실제 조사 단계는 말 그대로 연구자와 구술자가 만나 구술을 채록하는 과정이다. 끝나면 바로 다음

67) ‘가져오다.’, ‘참조하다.’라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터놓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하면서 충분히 감정적 혹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녹취록을 작성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다섯 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에서 채록한 구술 기록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때, 구술 당시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자의 느낌을 기술하는 후기도 작성한다. 여섯 째 단계는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마지막 단계인 일곱 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종료 후 프로젝트를 주최한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기록들을 표준화된 형태로 구축하여 향후 보존·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한다.⁶⁸⁾

수집된 구술 기록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다. 구술 채록 과정을 녹음한 영상·녹음테이프 혹은 디지털 파일, 사진, 구술자기 소장한 관련 자료, 구술 기록 수집 과정에서 나온 부속 자료⁶⁹⁾ 등이 있다. 구술 기록을 처음 수집할 당시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기록을 수집하는 데에만 급급해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술 기록 수집 과정 중에 나온 자료들이 많아지고 활용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기록학 분야에서 이를 제일 먼저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 결과, 위에 언급한 구술 기록 수집 단계가 정해졌고 구술 기록에 대한 관리 정책 및 전문가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⁷⁰⁾ 제주 4·3 사건 기록을 다루는 4·3 아카이브에서는 아직 정해진 구술 기록 관리 정책 및 관련 규정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기록을 수집한 다음, 기록을 표준화 규격으로 맞춰 수집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68)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p168.

69) 면담 개요, 녹취문, 면담일지, 구술자와 연구자의 신상기록카드 등

70) 권미현 (발행년불명).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 : 기본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 - 기획특집_기억의 기록화, 구술 기록과 구술사 아카이브. 국가기록원. p2

제5장 결론

제주 4·3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사건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원인을 꼽으라면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휘말려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처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중에서도 제일 크게 대립하고 있었던 국가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다. 이들의 대립으로 인해 제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 소련이 북한을 통해 들어오면서, 미국이 남한마저 공산주의화 될까봐 서둘러 남한으로 들어와 38도선을 경계로 대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 상황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기에 이데올로기의 영향 또한 제일 적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남한만의 총선거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에서도 동요가 일어나게 만들었다. 미군정은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화를 막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 아래에 두길 원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공산주의는 실패했음을 알리고 싶어 했다. 이승만 정권은 이 둘을 이용해서 정권을 안정 및 유지시키길 원했다. 결국 제주도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희생되었다.

이후 발굴된 제주 4·3 사건 관련 자료들 또한 그 영향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라 당시 이데올로기 및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상황까지 이해하고 봐야 기록을 수월하게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왜곡의 가능성성이 높고 가해자 측에 의해 작성된 기록들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증언까지 채록하여 구술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사건 발발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억이 명확하게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이유는 다른 기록들 또한 마찬가지로 100%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어떻게든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주관이 들어가면 그 즉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에, 결국 기록에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구술 기록을 배제할 수 없다. 구술 기록을 배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증언자의 대다수가 사건의 피해자들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주 4·3 사건 당시 배경과 그로

인해 왜곡된 기록들, 미군정이 남긴 자료들 그리고 현재 거의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수집 가능한 구술 기록들에 우선하여 기록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제주 4·3 사건 기록 관리의 틀을 잡아야 한다. 이때, 왜곡된 기록은 따로 분류하여야 한다. 왜곡의 기준부터 잡은 다음, 해당 기록의 어떤 부분이 왜곡됐으며 왜곡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록을 왜곡함으로써 어떤 이점을 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왜곡된 기록을 따로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및 인식 차이를 알기 위해서다. 제주 4·3 사건이 예전에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으로 매도되어 언론까지 폭동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국가 폭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폭동이라고 규탄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떻게 기록을 왜곡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후대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 이는 보통 역사학에서 중시되는 의무지만, 아키비스트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왜곡된 기록까지 분류 기준을 정하여 수집 및 관리를 해야 제주 4·3 사건 기록관리가 완성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고려대학교, (사)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2004). 안재홍(安在鴻) 유고집. 서울 : 고려사학회.

國防部 戰史편찬위원회 (1967). 韓國戰爭史 제1권—해방과 건군. 서울 : 동아출판사

정용욱 (2001). 제주 4·3 연구와 미군정 자료. 4·3과 역사. 제주 : 제주 4·3 연구소.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제2권. 서울 : 전예원.

제민일보 4·3 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제3권. 서울 : 전예원.

제주 4·3 연구소 (1989). 이제사 말햄수다 I. 서울 : 한울.

현길언 (2001). 역사와 문학 : 제주 4·3 사태의 문학적 형상화 문제. 제주 : 탐라목석원.

Bruce Cummings (1990). The Origins of Korean war Vol. II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 1945-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1998).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e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 Routledge.

John Roscoe Merrill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신성환 역). 서울 : 과학과 사상.

T. R. Schellenberg (1998). Modern Archives - Principle and Techniques, Chicago :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es.

2. 연속 간행물

고성만 (2008). 4·3 위원회의 기념사업에서 선택되고 제외되는 것들, 역사비평, 82, 158-187.

김동윤 (2003). 진실 복원의 문학적 접근 방식 : 현기영의 「순이 삼촌」론. 탐라문화, 23(0), 1-20.

김명훈 (2010).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 (24), 73-112.
- 김춘식 (2017).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 보도 관행과 방송의 민주주의 기능의 퇴행 : 정치권의 ‘의혹 제기’ 와 ‘폭로’에 관한 보도 분석(1992년~2012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5(3), 79-157.
- 박필현 (2015).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 : 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3(0), 225-250.
- 박찬식 (2006). 4·3 중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 61-95.
-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55-197.
- 윤택림 (2001).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6), 213-234.
- 이미영 (2018). 진실과 화해의 봄소식을 마중하며 : 제주 4·3 70주년 평화기행. 가톨릭평론, 14, 4-9.
- 이용기 (2002). 연구동향 :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364-384.
- 이정연 (2009).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163-184.
- 이진룡, 임진희 (2016). 담론 분석을 통한 기록관리전략 연구 : 5·18 담론의 기록왜곡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8), 141-179.
- 정호기 (2005). 기념관 건립 운동의 변화와 동학 : 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26-250.
- 조덕송 (1948). 유혈의 제주도. 신천지, 7.
- 허호준 (2011).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 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283-319.
- 日兵이 남긴 作戰施設 二千叛徒가 利用 金公安局長 濟州島視察談 (1948.04.30.). 동아일보(東亞日報), p.4.

3. 미간행 자료

- 강성현 (2002).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 대량학살시기(1948년 10월 중

순~1949년 5월 중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권미현 (발행년불명).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 : 기본 방향과 새로운 패러다임. 구술 기록의 관리와 활용 - 기획특집_기억의 기록화, 구술 기록과 구술사 아카이브. 국가기록원.

김득중, 김동춘 (2005). 민간인 학살 기록현황과 수집·관리 방안.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105-122.

문순보 (2001).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 미군정의 대제주도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명림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서혜진 (2006). 기록으로서의 사실과 허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특사 무초가 국무장관에게 (1948). RG319, Entry.57, Box. No.59, NARA.

Francois Rochat (2004). “Psychology, Archives, and Memor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Report of Activities on Cheju-Do from 22 May 48 to 30 June 1948”, NARA, RG 338, Entry.11070, Box. No. 68.

UN한국임시위원회 (1984), UN조선위원회 보고서 (임명삼 역). 파주 : 돌베개.

4. 특수형태 참고자료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 역사비평사.

5. 전자자료

고병수 (2018.3.31.). 특집 - 4·3 70주년 기념 II : 제주 43 사건. 마이민트.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7&sdate=0&skind=&sword=&bidx=1477529&page=2603&pageblock=7141

김관후 (2014.8.7.). ‘박진경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다’ : 강경 토벌작전으로 선회한 월

리암 F. 딘. 제주의 소리.

http://m.jes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0370&sc_code=&page=3&total=72

양조훈 (2011). “4·3 실상 처음 보여준 드라마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887>

장슬기 (2018.04.03.) 한국 언론의 불행한 출발은 제주 4·3 보도였다 : ‘괴선박 출현 설’ 등 허위 유포에 학살자 미화 보도까지…사실상 범죄에 협조한 언론.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067>

제주 4·3 아카이브

<http://43archives.or.kr/main.do>

제주 4·3 평화재단

<http://jeju43peace.or.kr/index.php>

최병근 (2018.08.12.). 제주4·3 폭동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곡.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446>

허완 (2018.04.03.) ‘제주 4·3’ 이 아직 낯선 당신이 알아야 할 7가지 : 비극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허핑턴포스트.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ac18c4ee4b0f112dc9d3e0d

A Study on the Collection Policy of 4·3 incident in Jeju

Cho Yu-Jung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Seung Hw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record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Jeju 4·3 archives and to present more systematic collection policies as one of the solutions. Since the records of the 4·3 incident have been buried for the past 50 years and have finally begun to see the light,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general record management policies as they have many special problems. First, the awareness and public opinion of the 4·3 was distorted during the long period of repression. This is not only true for 4·3 but also for many of the records that occurred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Second, the records of the 4·3 were distorted by various channels from various groups. Third, the distorted perception of the 4·3 by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was confirmed through the U.S. government's interview with relevant people and data related to the 4·3. Fourth, oral records usually have a disadvantage of being unreliable, but ironically, oral records are more reliable than other documents in 4·3 incident records.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policy of collecting records of 4·3 presenting four collection methods based on the above four characteristics.

Keyword

4·3 incident in Jeju, Oral record, Distorted record, Record collection policy, Testimony, 4·3 archive, 4·3